

#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 윤석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22
----------	------

발의년월일 : 2015. 10. 19.

발 의 자 : 윤석진 의원 등 21명

## 1. 제정이유

- 가. 최저임금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60%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나. 이러한 최저임금제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생활임금, 생활임금액, 최저임금,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외주화, 하수급인에 대해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나.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 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외주화 계약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산시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로 대상자를 선정함. (안 제3조)
- 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생활임금은 안산시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그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안 제4조~제6조)

- 라. 안산시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심의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31일까지로 규정함. (안 제7조~제11조)
- 마.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표창 등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도입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장려하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 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5.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서

6. 관계법령발췌서 등 : 붙임

7.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예고기간 : 2015.10.13.(화)~10.19.(월)

8. 기타 참고사항 : 집행부 검토의견서

#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 안산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 이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생활임금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4.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 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5. “출자·출연기관” 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6. “외주화”란 시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의 사무 및 업무에 대하여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이 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거나, 타 업체에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2.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3. 외주화 계약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임금의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및 가계 지출·소득 수준, 시의 재정상황, 지역의 노동·경제·환경 등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 한다.

1. 생활임금 수준(액)
2.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대한 개선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④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금액과 시간급으로 표시 한다

제6조(적용기간) 생활임금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산시의회 시의원 2명
2. 시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 및 예산 담당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추천인
4. 근로자의 생활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는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공개가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7월 31일까지

로 한다.

- 제12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안산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도입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6년도 생활임금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제7항

###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 소속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임금액
- 안산시생활임금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 또는 여비

## 2. 비용추계

###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에 적용할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중 생활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346명을 대상으로 함.

※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위탁·용역계약 등에 고용되는 근로자수는 안산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적용시기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적용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추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외

- 2016년도 생활임금액은 동 조례안 부칙에 따라 시장이 결정·고시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적용함. (※ 2015년 생활임금 적정성 용역결과 반영)

### 【2016년 생활임금액 결정 산출식】

1. 2014년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액의 50%  
 $= 2,660,100원 \times 50\% = 1,330,055원$
2. 안산시 최저생계비 하한선 8% 적용  
 $= 1,330,055원 + (1,330,055원 \times 8\%) = 1,436,460원$
3. 시급 : 6,873원 = 1,436,460원 / 209시간

- 2017년~2020년까지 비용추계는 안산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고시되는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추계가 어려우므로, 2016년을 기초로 연도별 인상률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2012-2016년(5년)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6.9%)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음.

### 【최저임금 현황】

(단위: 원, %)

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승률	일급 최저임금(8시간)	월급 최저임금(209시간)
2012	4,580	6.0	36,640	957,220
2013	4,860	6.1	38,880	1,015,740
2014	5,210	7.2	41,680	1,088,890
2015	5,580	7.1	44,640	1,166,220
2016	6,030	8.1	48,240	1,260,270

- 위원회 운영에 따른 재정수반 내용은 참석수당에 한하여 추계함.

※ 참석수당은 2015년 예산편성운영기준 준용 (80,000원/2시간 × 9명 × 1회/연)

## 나. 비용추계결과

- 동 조례안에 따라 안산시 생활임금 사업을 시행할 경우, 2016년 추계 비용 983,798천원을 시작으로, 2020년 1,284,525천원까지 향후 5년간 5,645,758천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총 소요액	983,798	1,051,631	1,124,144	1,201,660	1,284,525	
생활임금 추가소요액	983,078	1,050,911	1,123,424	1,200,940	1,283,805	상승률 6.9%
위원회참석수당	720	720	720	720	720	

※ 생활임금 추가소요액 산출방법 : 별첨

## 다. 재원조달방안 : 2016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4. 작성자 :

## 【생활임금 추가소요액 산출방법】

### ○ 생활임금대상자

- 생활임금액 월 1,436,460원 이하의 임금(기본급+주휴수당+간식비)을 받는 기간제근로자 (단, 국도비 지원사업은 제외)

(단위: 원)

구 분	2016 정수	기본급		수 당		월 급 여	생활임금 적용시 보전액	비고
		시급	일급	주휴수당	간식비			
단순업무	451	5,580	44,640	178,560	84,000	1,200,000	236,460	2015년 기준
		6,030	48,240	192,960	84,000	1,290,000	146,460	2016최저임금 (6,030원)
시설물관리	66	6,535	52,280	209,120	84,000	1,391,000	45,460	2015년 기준
보건복지업무	2	6,935	55,480	221,920	84,000	1,471,000		2015년 기준
현장작업	114	7,311	58,490	233,960	84,000	1,546,250		2015 기준

※ 한달 평균 21일 근무기준, 주휴수당 : 월4회 지급, 1일 간식비 : 4,000원

※ 보건복지업무 2명, 현장작업 근로자 114명은 2016년 생활임금 고시 예정액인 6,873원을 초과함으로 생활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 2016년도 생활임금 연간소요예산

(단위: 원)

구분	정원	생활임금 대상자수	기존임금액(A)	생활임금액(B)	차액(B-A)	비고
계	517	346	4,981,104,000	5,964,181,920	983,077,920	
단순업무	451	332	4,780,800,000 (398,400,000×12월)	5,722,856,640 (476,904,720×12월)	942,056,640 (78,504,720×12월)	
시설물관리	66	14	200,304,000 (16,692,000×12월)	241,325,280 (20,110,440×12월)	41,021,280 (3,418,440×12월)	

※ 기존임금액(A)은 2016년도 본예산 인건비 반영(2016년도 인건비 미확정으로 2015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반영됨)

※ 2016년도 인건비국도비매칭사업 제외

#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722
----------	------

제안년월일 : 2015. 10. 29.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 수정이유

-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에게 출석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부과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근거가 없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 생활임금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생활임금의 결정과 적용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 등을 위하여 경과규정 정비 및 조항 신설

## □ 주요골자

- 자구를 조문에 맞게 정비함. (안 제5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9조 제목 및 제2항, 제12조 제4항)
- 이해관계자 등의 출석 또는 자료 요구 조항을 정비함. (안 제10조 제6항)
- 2016년도 생활임금의 결정 고시 및 적용시기를 규정함. (부칙 안 제2조)

#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지역의 노동·경제·환경 등” 을 “지역의 노동·경제 환경 등” 으로 한다.

안 제8조 제2항 중 “아니한다.” 를 “아니하다.” 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 중 “해촉” 을 “위촉해제” 로 하고, 제2항 중 “해촉할 수 있다.” 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0조 제6항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를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2조 제4항 중 “표창할 수 있다.” 를 “포상할 수 있다.” 로 한다.

부칙 제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규정에” 를 “규정에도” 로 하며, “2015년 12월 31일” 을 “2016년 2월 29일” 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생활임금은 같은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부 칙	부 칙
<p>제2조(경과규정) 2016년도 생활임금은 제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u>2015년 12월 31일까</u> 지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p> <p>〈신설〉</p>	<p>제2조(경과규정) ①----- - 규정에도 ----- <u>2016년 2월 29일</u> - -----</p> <p>②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생 활임금은 같은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p>